

#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

번호	과제명	주요내용	개정사항	소관부서
<b>□ 방송분야(10개)</b>				
1	기부금품 모집광고 제한적 허용	○ ‘기부문화 선진화 및 기부활성화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허용	○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	방송운영총괄과
2	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범위 확대	○ 광고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전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	○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	방송운영총괄과
3	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완화	○ 주시청 시간대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시 의무편성비율 가점 부여	○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	편성평가정책과
4	방송발전기금 면제·경감	○ 누적 손실로 재정이 취약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감면기준 마련	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(제정) ※ 방송통신발전기본법(정부안) 국회 계류중('08.12월 제출)	정책총괄과
5	방송발전기금 이의 신청제도 신설	○ 방송발전기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, 방통위는 30일 내에 처리결과 통보	○ 방송법시행령	정책총괄과
6	중계유선 변경허가 사항의 신고제 전환	○ 시설이전 등 변경시, 변경허가 받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	○ 방송법	뉴미디어정책과
7	중계유선 방송실시 결과 제출의무 면제	○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방송실시결과 제출의무 조항 삭제	○ 방송법	뉴미디어정책과
8	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 폐지	○ 방송법상 “음악유선방송사업자” 등록제도 폐지 - 「음악산업진흥법」의 “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사업자”로 규제일원화(신고제)	○ 방송법	뉴미디어정책과
9	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허가·승인 심사비용 부담 폐지	○ 사업허가 또는 심사시 소요되는 실비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를 폐지 - 현재, 정부예산으로 처리	○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·신고·승인 절차 및 기준(고시)	융합정책과
10	방송통신 분쟁제도 개선	○ 방송에 관한 분쟁조정대상 확대 (방송사업자⇒방송·통신·IPTV사업자)	○ 방송법 시행령 ※ 방송법(한선교 의원) 국회 계류중('08.12월 제출)	조사기획총괄과
<b>□ 통신분야(10개)</b>				
11	도매제공 도입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마련	○ MVNO 도입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·의무서비스 지정, 도매제공 조건 등을 마련	○ 도매제공 관련 고시(제정)	통신경쟁정책과

12	정보통신공사업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	○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,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	○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※ 정보통신공사업법(홍사덕의원) 국회 계류중('09.9월 제출)	네트워크 기획보호과
13	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	○ 유사업종인 전기공사업, 소방공사업 등에 비해 과도한 과태료 금액 조정	○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	네트워크 기획보호과
14	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 개선	○ 건축사만 할 수 있는 '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'를 정보통신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	○ 정보통신 공사업법	네트워크 기획보호과
15	대리점 위법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명확화	○ 통신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, '상당한 주의'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, -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	○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(훈령)	조사기획총괄과
16	부가통신사업자 신고면제제도 개선	○ 전기통신설비 규모와 관계없이, 자본금 1억원 이하면 신고면제 되도록 제도 개선	○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	통신이용제도과
17	양수·합병 인가신청 방법 개선	○ 인가신청 방법을 다양화 (서면⇒서면·전자방식 등)	○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	통신경쟁정책과
18	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	○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부과기준을 공정거래법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 있게 조정 (2회 반복⇒3회 반복)	○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(고시)	조사기획총괄과
19	비현행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	○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내용이 상충되는 비현행 고시를 폐지	○ 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 폐지 ※ 2000. 7월 제정	개인정보 보호윤리과
20	정보통신공사업 재등록 기준 완화	○ 일정규모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공사업체는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재등록의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위반처분기준을 완화	○ 정보통신공사업법	네트워크 기획보호과
<b>□ 전파분야(8건)</b>				
21	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	○ 방송통신기기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(4개→2개) 제조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인정 범위도 확대 ※ 인증유형 : 형식승인·형식검정·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⇒ 적합인증 및 등록	○ 전파법시행령 ※ 전파법(정부안) 국회계류중('09.1월 제출)	전파기반팀
22	지상파DTV 동일채널 소출력 중계기 허가 제도 개선	○ DTV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'소출력 중계기'를 허가·신고없이 개설했을 수 있도록 개선	○ 무선설비규칙	전파방송관리과

23	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시험 기준 완화	○ 3급 실기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아마추어무선기사의 무선통신술 출제기준을 완화	○ 전파법시행령	전파기반팀
24	아마추어 무선기사 시험면제 자격종목 도입	○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취득할 수 있는 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제도 신설	○ 전파법시행령	전파기반팀
25	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의 공중선전력범위 확대	○ 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공중선 전력범위를 상향조정(1급 : 500W→1kW, 2급 : 100W→200W)	○ 전파법시행령	전파기반팀
26	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인증제도 개선	○ 50W 이상 의료기기에 대해 전파법에 따라 허가는 받되, 제조·수입시 '형식등록'의무는 의료기기법과 중복되므로 삭제	○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	전파기반팀
27	공중선계의 피뢰기 및 접지장치 설치 의무 완화	○ 무선설비 시설 설치시 인명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건물에 설치된 기존 피뢰기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, 접지도 개별 또는 공통접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	○ 무선설비규칙	주파수정책과
28	무선국 개설시 신고서류 간소화	○ 중복 양식 통합 및 서식 간소화	○ 전파법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(고시)	전파정책기획과